

라. 전문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완화(영 제24조)

- 1) 전문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요건 중 「국가표준기본법」에 제 23조에 따른 인정 규정을 삭제함.
- 2) 전문검사기관의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인정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마.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의 기준 완화(영 별표 3)

- 1)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 현장에서의 실무경력을 고려하고 가스 관련 기술 발달에 따라 선임 인원의 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2) 소규모 냉동제조시설의 경우에는 일정한 실무 경력이 있는 냉동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도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프레온을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제조시설이 중앙통제시스템을 갖춘 경우에는 안전관리원의 수를 2분의 1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함.
- 3)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그 선임 인원을 합리적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인

2009년 11월 19일

국 무 총 리 정 운 찬

국 무 위 원 지식경제부 장 관 최 경 환

●대통령령 제21831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할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증가환율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 중 적은 것으로 한다.

제3조제2호나목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호나목에 따른 법인(「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이에 준하는 자로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발행주식(「상법」 제 370조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

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최대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본인)을 말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자는 본인이 개인인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하며, 본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을 말한다)인 기업이 아닐 것.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자산총액을 계산할 때 외국 법인의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하는 기준환율을 직전연도 증가 환율과 직전연도 평균 환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환율변동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중소기업에서 갑자기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자산이 5천억원 이상인 국·내외 대기업이 해당 중소기업 주식의 30퍼센트 이상을 보유한 경우라도 대기업이 최대주주가 아니거나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회사가 중소기업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그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09년 11월 19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최경환
장관**

●대통령령 제21832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여성기업활동촉진위원회”를 “균형성장촉진위원회”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여성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 구성)”을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여성기업활동촉진위원회”를 “균형성장촉진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여성기업제품의 구매증대) ① 법 제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물품 및 용역의 경우는 각 구매총액의 5